

의안번호	2215629
의 퇴 인	송재봉 의원
회 답 일	2026. 1. 6.
추 계 번호	25F7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 정련·제련시설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대상으로 추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04조의15 제1항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세액공제 적용 대상 추가 -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련·제련을 위한 시설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4조의15 제1항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대상으로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 정련·제련시설을 추가하므로 법인세 감소가 예상됨

[표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소득세 및 법인세

(단위: 억원)

	2023	2024	2025(전망)
과세특례 실적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신설	0	0.05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표 2] 개정안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

현행	개정안
투자 (광업권 조광권 취득 목적)	투자 (광업권 조광권 취득 목적)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광업권 조광권 취득 목적)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광업권 조광권 취득 목적)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자회사의 광업권 조광권 취득 목적)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자회사의 광업권 조광권 취득 목적)
(신설)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련·제련 시설에 대한 투자

□ 이차전지 생산 과정은 ①광물 채굴→②소재용 가공→③주요소재 생산→④최종재 생산으로 요약됨¹⁾

○ 주요 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으로 각각 여러 국가에서 채굴됨

- (리튬) 칠레, 호주, 중국
- (니켈)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 (코발트)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캐나다, 호주
- (흑연) 중국,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브라질

○ 주요소재(major components)는 양극재(cathode materials), 음극재(anode materials), 전해액(electrolytes), 분리막(separators)으로 구성되며 중국 의존도가 높음

□ 우리나라는 양극재(cathode materials)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가공 역량도 미흡하다는 평가²⁾

○ 양극재는 전구체(precursor)에 리튬을 배합해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는 전구체와 리튬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

※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조합한 화합물

○ 리튬 생산의 경우 호주와 칠레의 비중이 높으나 제련은 중국 비중이 높음

- 리튬매장량(%): (호주) 25 (칠레) 41 (아르헨티나) 10 (중국) 7
 - 리튬생산량(%): (호주) 48 (칠레) 26 (중국) 16 (아르헨티나) 7
 - 리튬제련량(%): (중국) 65 (칠레) 17 (아르헨티나) 9 (호주) 4
 - 수산화리튬제련량(%): (중국) 75 (호주) 9 (한국) 8 (칠레) 3 (미국) 3 (일본) 2
- 코발트, 리튬, 망간 제련의 경우 중국 비중이 높음
- 코발트제련량(%): (중국) 70 (핀란드) 6
 - 망간제련량(%): (중국) 90

□ 내국법인의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 정련·제련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차전지 소재 광물 정련·제련시설 투자 규모와 출자기업의 과세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관련 정보가 부재함

1) 박재성, “이차전지산업의 GSC 및 GVC 분석”, 한국은행, 2024.

2) 임지훈,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 분석: 리튬”, Trade Focus 2022년 21호.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차전지 소재 광물 정련·제련시설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대상으로 추가하는 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